**방법론 관리 지침**

제정 2023. 02. 23.

1. **(목적)** 본 지침은 탄소감축인증표준(KCCI Carbon Standard, 이하 “KCS”)에 따른 방법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방법론 등록 신청)**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감축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 제안서
      3. 감축사업 방법론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검증기관은 감축사업 방법론 검증 시 별표 3-1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 평가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단, 제5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의 감축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5. 기타 사항
3. **(방법론 검토)**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2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축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4. 기타 탄소감축인증센터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수정·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3.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감축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감축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5. 감축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보완서류를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탄소감축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4. **(방법론 승인 심의)**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방법론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토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축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5. **(방법론 등록)**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을 ‘등록부 관리 지침’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 감축사업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감축사업의 장려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방법론을 개발·승인할 수 있다.
6. **(방법론 개정)**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기존 승인 방법론이 등록된 지 5년이 경과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3.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외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5.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감축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 제안서
      3. 개정된 감축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지 검토 후 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7.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2. 감축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탄소감축인증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탄소감축인증센터는 해당 이의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방법론 개정의 효과)**
   1.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감축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감축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적용 가능 기간 등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2023. 0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